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50279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주식회사

서울 중구 ○○동

대표이사 김〇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규선

피 고 B (00000-000000)

인천 동구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찬

변 론 종 결 2008. 3. 4.

판 결 선 고 2008. 3. 18.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26. 02:24경 인천 남구 숭의동 117 소재 육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홍(피고의 고용주)은 2004. 2. 18. 원고의 전신인 C 주식회사(2008. 3. 6. 원고로 상호 변경 등기)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홍,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04. 2. 18.부터 2014. 2. 18.까지,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후유시 보상금 50,000,000원, 상해생활자금 1,000,000원, 일반상해의료비 1,000,000원, 일반상해입원비 1일당 1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장기상해뉴해피카운전자보험Ⅱ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통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하되(약관 제13조제1항 제1호),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미수의 사유로 생긴 손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다(약관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

다. 피고는 2006. 9. 26. 02:24경 인천 남구 숭의동 117 소재 육교(도원역과 제물포역

중간 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4개 전철 선로의 횡단을 위한 것)에서 난간(그물 모양의 철 망으로 이루어진 약 2m 높이의 난간)을 넘어 10m 아래로 추락하여 척추 손상, 경추 탈골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06. 9. 26. 경추부 탈골의 정복술 및 전방경유 추체간융합술, 2006. 10. 2. 경추부 후방고정술을 받았고, 2006. 9. 26.부터 2007. 1. 3.까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7. 4. 23. 현재 사지마비 상태이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위 난간에 올라가 10m 아래의 전철 선로로 뛰어내려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자살미수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툰다.

나. 고의 또는 자살미수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자살(이하 '자살'이라고만 한다)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유서와 같이 피고의 자살 시도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바, 결국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피고의 고의 또는 자살 미수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갑제5호증, 제7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경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처인 최 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이었으며, 위 최 가 2003. 11.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합계 3,5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2주일 전에 사촌형에게 회사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 초에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여 3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고, 2001.경 사직하였다가 2004. 6.경 재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가 일 때문에 지치거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좋은 편이었으며, 일을 잘하는 편이었고, 성과급을 포함하여 월 250 내지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직장에 다니고 일정한 수입을 올리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는바, 처에게 지병이 있고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나 사촌형에게 직장 생활에 대한 푸념을 한 적이 있 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고의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자살을 시도할 동기나 징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고의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이고, 피고가 술에 빨리 취하는 편이었던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는 19:00경 퇴근한 후 성당 친구인 소외 김 과 술을 마신 사실, 이 사건 육교 위 난간의 높이는 2m 이내인 사실(원고는 난간의 높이가 3m 정도이고 발을 디딜 곳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제5호증에 첨부된 사고 장소의 사진을 보면 위 난간의 높이는 사람 키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고 그물코의 너비도 발을 디딜 만한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육교는 4개의 전철 선로 위에 놓여있는데 피고의 추락 지점은 4개 전철 선로의 바깥쪽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평소 주량, 퇴근한 시각과 사고 시각 사이의 간격, 위 난간의 높이나 형상 및 피고는 육교에 오른 직후 또는 육교에서 내려가기 직전에 난간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바, 경험칙상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육교 가운데에서 난간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당시 피고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육교를 걸어가던 중 눈앞에 난간이 마주치자 단순히 이를 넘어가고자 하는 생각에서 난간에 올랐다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위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미수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	ᆫ	_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채웅	
	판사	이수진	
	런사	이구선	
	판사	한지형	

보험계약내용

1. 보험 종목 : 무배당장기상해뉴해피카운전자보험Ⅱ

2. 보험 기간 : 2004. 2. 18.부터 2014. 2. 18.까지

3. 보험계약자 : 홍

4. 피보험자 : B. 끝.